

# 2024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2. 7.(수)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종수 위원, 원은자 위원, 이승민 위원, 권현정 위원</li> <li>○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li> </ul>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4 : (공동주택지원과-17992)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 문서</li> <li>○ 2024-5 : (전략사업과-4464) 제8차 역세권주택 사전 검토단 회의 결과 알림 문서</li> <li>○ 2024-6 : 구급일지 내용 수정</li> <li>○ 2024-7 : 경희공지 일대 종합공간구상 용역결과보고서</li> </ul>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4 : 기각</li> <li>○ 2024-5 : 기각</li> <li>○ 2024-6 : 각하</li> <li>○ 2024-7 : 기각</li> </ul>

# 1. [의안번호 2024-4] : (공동주택지원과-17992)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 문서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4호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를 하시면서 해당 내용이 링크돼서 정보공개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부분공개 내용으로 상당 부분이 공개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부분은 해당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마스킹돼 있고, 그다음 붙임에 현재 그쪽 부서에 비공개 자료를 공개를 해달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비공개 사유 중에 8호에 나중에 이 해당 내용이 공공용지로 편입되고, 나중에 해당 학교용지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따라서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궁이 가는데요. 거기 비공개 사유 중에 보면 아직 논의 중인 내부업무 문서라고 돼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해당 논의는 언제쯤 끝나나요?

○ 000 주무관

이거는 사실상 학교마다 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 확실하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께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 학교가 없어지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동요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자치구나 교육청 쪽에도 이 자료는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정도의 자료만 해서는 저희 관련 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공개를 한 상태고요. 사실상 이 자료는 저희 부서 정도, 내부 결재자 정도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서 검토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사업마다 시점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러면 이 미집행 학교용지의 경우에 이게 나중에 미집행되면 공공용지가 되고, 이 공공용지는 나중에 어떤 공공적 용도로만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해당 부처에서는 부동산투기 우려라고 돼 있는데 해당 용지가 나중에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용지 주변으로 뭔가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000 주무관

우선 공공공지라는 거는 아직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용도로 해서 저희가 통상 칭하는 용어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학교가 먼저 결정을 하고, 이게 저희가 공공공지로 설정은 해놓지만 교육부에서 또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면 이 건 학교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변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우선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로 변경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당분간 뭔가 시설이 올 때까지 그렇게 공공공지 상태로, 휴게공간이나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광장 같은 개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투기 우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요.

○ 000 주무관

우선은 투기 개념은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안 좋은 아파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호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시설들이 있

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부지가 현재로서는 학교다라는 거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게 공공지로 변경되고 나중에 다른 시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는 좀 안 좋구나 이런 우려가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학교인 거니까 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는 시점은 중앙투자심사가 탈락이 되고 나면 그때는 뭐든 바뀌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이게 나타나도 무리가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무관님,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지금 블라인드 처리한 부분도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시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비사업마다 사업 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만약에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이 사업이 모두 다 끝나는 시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일단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이후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방금 소관부서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소관부서 의견대로 현재 이게 계속 논의 중인 내부업무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학세권 또는 초등학교 역세권 뭐 해서 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어디에 들어오는지가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투기 우려를 이야기하는 저희 정보공개법 9조 8호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의견대로 2호, 8호에 따라서 이미 부분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의 청구내용 부분은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5호, 8호지요? 아까 2호, 8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000 위원

그런가요? 그게 내부업무 그게...

○ 000 위원장

5호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5호, 8호로 변경합니다.

○ 000 위원장

5호, 8호에 의거해서 기각 의견으로 주셨고요.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000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어차피 학교시설은 나중에 이게 학교시설로 결정됐을 때 이미 고시가 됐을 거고, 이게 용도변경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때 또 고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실제로 학교시설로 안 쓰게 되면 그 단계에서 행정계획으로 고시가 되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말씀처럼 5호와 8호에 의해서 기각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8호에 의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러해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5호와 8호에 의해서 본 안건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2024-4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의안번호 2024-5] : (전략사업과-4464) 제8차 역세권주택 사전

### 검토단 회의 결과 알림 문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5호 공공주택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먼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가 2021년 12월 7일에 있었다 이것만 지금 공개가 된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지금 청구인이 회의했던 자료를 달라고 지금 재차 청구한 것이고요. 맞나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호하고 8호 사유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심의 중인 자료라는 사유니까 그러면 언제 심의가 끝날 예정이기는 한가요?

○ 000 주무관

이게 사전검토단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 건지에 대한 굉장히 초기의 검토단계에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사업추진위 쪽에서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진행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는 끝난 상태인데 이 관련 사업 자체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개발 통합하고는 다른 겁니까?

○ 000 주무관

다른 유형의 사업방식입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이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이 사건은 관련 서류나 주무관의 답변으로나 지금 전체 사업 자체는 진행 중인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당연히 부동산투기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호랑 8호에 의해서 비공개 결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동일하게 기각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8호에 의거해서 기각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본 안건은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8호에 의거해서 기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2024-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의안번호 2024-6] : 구급일지 내용 수정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6호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신 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급활동 일지에 구급대원 평가소견을 수정하라는 정보공개청구라서 취지가 안 맞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청구인이 혹시 구급대에다가 신고한 사람인가요? 비공개가 돼 있던데요. 그건 확인이 되나요?

○ 000 소방교

신고자로 확인됩니다.

○ 000 위원

신고자로요?

○ 000 소방교

네.

○ 000 위원

이분이 무슨 형사 피의자 신분인가요?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 000 소방교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 000 소방교

맞습니다.

○ 000 위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정 의견이라서 제가 여기서 더 확인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

저는 없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없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교님께서도 잠시 이석하셨다가 저희 논의 이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님, 먼저 주심위원으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구급대원 평가소건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라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주무부서 의견대로 각하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가 아마 지지난번 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출동확인서를 수정해달라는 아마 청구권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각하한 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각하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본 안건은 각하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2024-6호는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 [의안번호 2024-7] : 경희궁지 일대 종합공간구상 용역결과보고서

### ○ 000 위원장

네 번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7호** 도시공간전략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000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업체는 입찰로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 ○ 000 주무관

일반공개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 ○ 000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안전상정요청서에 보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의 결과물로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여기 공간구상 사업을 할 때도 이 업체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는 그냥 이 보고서만 제출하고 이제 완료가 된 건가요?

### ○ 000 주무관

이 보고서만 제출하고 완료가 된 거고요. 아직 저희가 이 구상안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 000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안전상정요청서에 이게 현재 내부검토 진행 중이어서 이게 대외로 배포가 될 시에 서울시 정책 결정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경희궁지 일대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어떤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건가요, 내부에서?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대략적인 예산으로 본인들이 기재를 한 것인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그 제출한 공간구상안에 맞춘 사업비를 제시를 한 겁니다.

○ 000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수행을 할 때 서울시 내부에서 뭔가 자료를 제공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 000 주무관

기초자료를 제공을 한 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기 여러 부지가 있어서 각 부지에 예를  
들면 교육청 이전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운  
영 종료시기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자료는 제공했  
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9조의 5호만 비공개 사유로 보고 계신 거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따로 이게 공개될 경우에 어쨌든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회사니까, 법인이라서 그 용역 수  
행한 업체의 어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000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님 직전의 말씀과 관련된 건데요.

혹시 용역결과보고서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비공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이 용역보고서요. 비밀유지 의무나 그런 건 없었나요?

○ 000 주무관

용역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말씀이십니까?

○ 000 위원

이거 서울시하고 계약한 거지요? 용역결과보고서 할 때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서울시하고 용역계약할 때 이 용역보고서를 제3자한테 비밀유지 의무라든가 이런 계약 조항이 있었나 싶어서요.

○ 000 주무관

그건 있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신청인은, 제가 이의신청서를 보면 경희궁지 일대 종합공간구상 용역결과 보고서는 이미 준공이 난 사안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준공이 난 사안이라는 게요.

○ 000 주무관

용역이 작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 용역보고서가 서울시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수정될 일은 없다라는 뜻으로,

○ 000 위원

이 보고서 자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부검토 과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분이 쓴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경희궁지 일대 개발계획이 아직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7호를 000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3자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있다면 앞에서 디자인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이게 근거사유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도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내부검토 과정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업체의 디자인권도 보호해 주고, 그러면 내부검토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7호를 추가해도 될 것 같거든요.

○ 000 주무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지금 연구보고서에 그 카피라잇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납품을 했기 때문이에요.

○ 000 주무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7호로 연결을 해도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프리즘(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리잖아요.

서울시도 연구보고서를 프리즘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리나요?

○ 000 주무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거기에도 비공개 사유를 적시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 자체를.

○ 000 주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아직 프리즘에 업로드된 안 된 상태인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구가 종료된 다음에 한 달인가 뭐 그 안에 업로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000 주무관

그 사항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000 위원님, 000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면요.

제가 금방 검색을 해 보니까 이 경희궁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이미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2개월짜리 관련 연구용역 과제가 발주가 되었다, 올해 말에 보고서가 나온다. 축구장 19배 크기의 경희궁지 역사공원이 조성된다 하고, 실제로 꽤 구체적인 지금 관련 전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제 말은 지금 비공개 사유 중에 앞서 여러 개를 지적하셨는데요. 만일 이미 지금 종합개발계획서가 공개가 되고 하면 그 주변 일대에 부동산시장에도 꽤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렇다면 사실 미리 이 해당 용역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부동산시장의 투기 우려도 있기 때문에 8호 사유 추가는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 000 주무관

8호 사유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 구상안에 포함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간부지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8호 사유를 넣었다가 나중에 그런 민간부지가 빠진 형태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명확한 사유만 달자라는 입장에서 5호만 명기를 했습니다.

○ 000 위원

제 말씀은 사실 민간부지가 편입이 안 돼도, 이런 마스터플랜으로 된다는 것만으로도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우려는 그 부분까지 넓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 000 주무관

그럴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이상입니다.

○ 000 위원

저도 조금만 더 추가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용역보고서는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가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쪽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공고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전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한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도시계획의 수립 근거자료로, 혹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에 서울시가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도시계획 수립 이후에라도 공개해 왔어요, 아니면 일체 비공개로 해 왔어요? 어떤가요?

○ 000 주무관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런데면 뭐 저희가 부동산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검토,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어도 일관되게 비공개로 유지한 건들도 꽤 있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장

없으시면 주무관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마친 이후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당초에는 5호와 7호 사유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견은 기각입니다마는.

근거조항에 대해서 5호, 7호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7호까지를 병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쨌든 어떤 용지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호를 병기해서 5호, 8호로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5호, 7호로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여기 디자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래서 이 아이디어는 용역 업체의 아이디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작권이 서울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또 8호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투기 위험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라서 이런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8호를 추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저는 일단 확실한 조항은 5호로 기각 의견을 내고, 7호, 8호는 좀 보류해 두겠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방금 000 위원님께서 8호 추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셨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해당 사업 자체가 경희궁지를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여튼 역사공원에서 공원 일대를 만들게 되면 인근에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확정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보고서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호 추가를 해도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도 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도 8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영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구체화된 도시계획의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법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또 분명히 도시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해서 8호 사유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7호 사유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작권 귀속 여부하고 영업 또는 경영상 비밀 여부는 논리·필연적으로 꼭 연관된 것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7호 사유로도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사유가 5호도 되고 8호도 되고 하니까 굳이 7호까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정책보고서라서 이게 8호까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5호는 당연히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 분이 일단 5호, 8호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000 위원님은 7호, 8호는 살짝 유보를 하셨었는데요. 8호를 넣는 걸로 할까요?

○ 000 위원

어쨌든 지금 다수결이 8호 적용됐으니까 8호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도 8호를 넣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5호, 8호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와 8호에 의해서 기각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 안건은 기각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5호와 8호에 의거해서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2024-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